

2012년 정기총회 순서

■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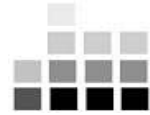
- 인사말
- 축사 1. 6.15남측위원회
- 축사 2. 6.15북측위원회
-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 내빈소개
- 고문, 지도위원 위촉식
- 6.15민족통일상 시상식

■ 2 부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선출
- 안건 및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안건 2 : 2011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 안건 3 : 2011년 결산 심의의 건
 - 안건 4 : 규약개정 건
 - 안건 5 : 임원 선출의 건
 - 안건 6 : 2012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 안건 7 : 2012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서기록 발표
- 폐회 선언
- 대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
- 저녁 식사

...내리비치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1
10.4선언 전문	2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5
6.15경기본부 규약	7
6.15경기본부 체계	11
상임대표 인사말	15
축사 1. 6.15남측위원회	16
축사 2. 6.15북측위원회	17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18
안전 심의	19
①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20
② 2011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22
③ 2011년 결산 심의의 건	43
④ 규약 개정 건	44
⑤ 임원 선출의 건	49
⑥ 2012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50
⑦ 2012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56
참고 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규약	57
참고 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59



6.15남북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10.4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 속에 지난 3월 4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이하 6.15 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결성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향각자·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지향의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튼튼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였고,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그릴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은 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통일국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전민족의 통일선언이다!

우리민족의 의지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을 선언한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 고통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다시금 강토와 핏줄을 이어내고자 하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절절한 통일 열망을 담아 결성되는 일상적인 통일실천 기구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경기도의 각계, 각층,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결성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이며,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 조직체이다.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의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까지 포함하여 한 세기를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야했고, 강대국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당해왔으며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자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기어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내고야 말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염원에 기초하여 탄생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보이며, 자주통일의 시간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으며, 통일운동은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민족의 힘으로 탄생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단결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분단의 고통이 가장 절절하게 스며있는 지역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분단의 장막을 길게 드리우고 있는 지역이며,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 또한 경기도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토와 자주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모든 외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족 통일만이 우리 조국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기념하고 1천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통일대업에 경기도의 제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같은 민족보다 더 큰 동맹은 없으며, 민족만큼 강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하기에 민족이 갈라져서는 어떠한 번영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에 맞서 100년을 싸워온 자주성 드높은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로 총 망라되어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자!

전민족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가 가장 앞장서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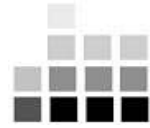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5년 4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본부 규약

제정 : 2005. 4.29
1차 개정 : 2006.3.16
2차 개정 : 2007.3.27
3차 개정 : 2009.1.22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
- 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 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 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 제5조(운영원칙)
 - 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를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
- ②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②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 3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와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계획 결정과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 ④ 예산과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2조(구성) 상임대표,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와 수입사항 처리
- ② 가입, 탈퇴, 사고에 관한 사항
-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 ⑤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인선에 대한 건
-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⑦ 고문과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과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위원회

제15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제16조(구성과 소집)

- ① 집행위원회는 시군본부 집행책임자와 부문단체의 약간 명으로 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부문단체의 약간 명은 부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 수입사항 집행
-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 ④ 필요시 확대 집행책임자연석회의 소집

제5절 자문기구

제18조(구성) 각계 원로와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19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0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과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2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2조 (사무처)

-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수입 및 지출) 6.15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4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책정한다.

제25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6.15경기본부 체계

6.15경기본부 2011년 체계

■ 고 문 [현재 18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민경학 (전 전농경기도연맹의장)	10	강성종 (국회의원)
2	박기래 (안산통일학교교장)	11	문학진 (국회의원)
3	백규현 (여주세종신문사이사장)	12	안민석 (국회의원)
4	석달윤 (통일 원로)	13	이기우 (전 국회의원)
5	안재구 (통일 원로)	14	이원영 (전 국회의원)
6	이기형 (시인)	15	최 성 (고양시장)
7	임병규 (남양주향토사료관관장)	16	장문하 (경기민언련 상임대표)
8	한명수 (세계밀알연합회 이사장)	17	홍희덕 (국회의원)
9	효림스님 (봉국사 스님)	18	채수일 (한신대 총장)

■ 지도위원 [현재 13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김동균 (변호사)	8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2	박공우 (변호사)	9	윤화섭 (도의원)
3	수산스님 (대승원)	10	백승대 (도의원)
4	김형식 (전 도의원)	11	고영인 (도의원)
5	송영주 (도의원)	12	임종성 (도의원)
6	조복록 (전 도의원)	13	김용한 (성공회대 교수)
7	최철환 (교육의원)		

■ 감사 : 박우석(경기민언련 공동대표), 양홍관(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 상임대표 : 윤기석 목사 (수원교회 명예목사)

■ 공동대표 (현재 36인)

번호	단 체 명	번호	단 체 명
1	6.15고양본부	19	민주노동당경기도당
2	6.15수원본부	20	민주당 경기도당
3	6.15안산본부	21	민주노동당경기본부
4	6.15안양본부	22	범민련경기인연합
5	국민참여당경기도당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6	경기대련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본부
7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25	전농경기도연맹
8	경기복지시민연대	26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9	경기여성단체연합	27	천도교수원교구
10	경기여성연대	28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11	경기자주여성연대	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기본부
12	경기청년연대	30	홍사단경기도협의회
13	경기환경운동연합	31	장원철((주) 듀텍홀딩스 대표이사)
14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32	김상희(한일웨딩부페 대표)
15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33	전환식(6.15사과원 대표)
16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부	3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본부 경기지부
17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35	박준철
18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36	경기남부평통사

6.15경기본부 2012년 체계

■ 고 문 (19명)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민경학 (전 전농경기도연맹의장)	10	문학진 (국회의원)
2	백규현 (여주세종신문사이사장)	11	안민석 (국회의원)
3	석달운 (통일 원로)	12	이기우 (전 국회의원)
4	안재구 (통일 원로)	13	이원영 (전 국회의원)
5	이기형 (시인)	14	최 성 (고양시장)
6	임병규 (남양주향토사료관관장)	15	장문하 (경기민언련 상임대표)
7	한명수 (세계밀알연합회 이사장)	16	홍희덕 (국회의원)
8	효림스님 (봉국사 스님)	17	채수일 (한신대 총장)
9	강성중 (국회의원)		
2012년 추가 위촉			
1	이흥기 (전농경기도연맹 전 의장)	2	박우석 (6.15경기본부 전 감사)

■ 지도위원 (20명)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김동균 (변호사)	7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2	박공우 (변호사)	8	윤화섭 (도의원)
3	수산스님 (대승원)	9	고영인 (도의원)
4	송영주 (도의원)	10	임종성 (도의원)
5	조복록 (전 도의원)	11	김용한 (성공회대 교수)
6	최철환 (교육의원)	12	이상성 (도의원)
2012년 추가 위촉			
1	김주삼 (도의원)	5	이재삼 (교육의원)
2	김현삼 (도의원)	6	이천환 (한사랑병원 원장)
3	유미경 (도의원)	7	정기열 (도의원)
4	안혜영 (도의원)	8	최창의 (교육의원)

■ 감사 : 이주현(매원교회 목사), 조지훈(범무법인 다산 변호사)

■ 상임대표 : 윤기석 목사 (수원교회 명예목사)

■ 공동대표 (36명)

번호	단 체 명	번호	단 체 명
1	6.15고양본부	19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2	6.15수원본부	20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3	6.15안산본부	21	민주노총경기본부
4	6.15안양본부	22	범민련경인연합
5	6.15용인본부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6	경기남부평통사	24	전국공무원노조경기본부
7	경기대련	25	전국공무원노조교육본부 경기지부
8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26	전농경기도연맹
9	경기복지시민연대	2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10	경기여성단체연합	28	천도교수원교구
11	경기여성연대	29	통합진보당경기도당
12	경기차주여성연대	30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13	경기청년연대	31	한국노총경기본부
14	경기환경운동연합	32	흥사단경기도협의회
15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33	김상희(경기도의원)
16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34	장원철((주) 듀텍홀딩스 대표이사)
17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35	전환식(6.15사과원 대표)
18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36	양홍관(생명살림연구소 소장)

■ 후원회원 [132명]

강덕심, 강명우, 고영인, 고제형, 권영환, 권용희, 기봉설, 김동균, 김동욱, 김명희, 김미희, 김복열, 김성태, 김성현, 김용한, 김원조, 김윤기, 김정아, 김정현, 김종완, 김준영, 김진국, 김진훈, 김춘식, 김충모, 김향미, 김현호, 김희경, 김희정, 나윤철, 도순금, 류수현, 문주남, 민영완, 민진영, 박공우, 박덕제, 박비상, 박옥분, 박우석, 박재형, 박진우, 박현기, 방용승, 범상스님, 서애란, 서종훈, 서주애, 송명희, 송순자, 송영주, 송원찬, 송현숙, 수산스님, 신광수, 신동철, 신영균, 신용승, 안민석, 안소희, 안재구, 안형원, 양성열, 양홍관, 양훈도, 엄주표, 오지훈, 원순자, 유신호, 유은옥, 윤기중, 윤영훈, 이강진, 이경진, 이계연, 이광열, 이광희, 이근민, 이기우, 이달호, 이대근, 이득규, 이미숙, 이상규, 이상성, 이상훈, 이성희, 이영선, 이영학, 이유킨, 이원영, 이은애, 이재동, 이재정, 이정미, 이정은, 이종선신부, 이종섭, 이주현, 이종구, 이충익, 이호현, 임성욱, 임종성, 장문하, 장성희, 장해영, 전용두, 전주영, 정광영, 정 준, 정혁남, 정현경, 조규석, 조명심, 조복록, 조상현, 조용철, 진승일, 천성욱, 최명림, 최봉현, 최철환, 최현수, 한대규, 한명수, 한옥자, 한지수, 허재원, 허재호, 홍미라, 홍희덕



상임대표 인사말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그리고 공동대표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짝 막혀 한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평화통일교육사업을 비롯하여 경기통일마라톤,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사업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정치의 해, 변화의 해라고 합니다.

6.15정부와 6.15국회가 들어서지 않고서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6.15시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4년 내내 똑똑히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앞으로 4년, 5년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당리 당과를 넘어서서 6.15공동선언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반통일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6.15국회, 6.15정부를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통일 희망, 통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출발은 2012년 승리입니다.

2013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 2012년 변화를 이루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윤기석



축사1. 6.15남측위원회

고삐를 더욱 굳게 쥐고, 희망의 길을 달려갑시다

김상근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의 2012년 총회를 축하합니다.

격동의 2012년을 맞으며 지난 한 해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기석 경기본부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지와 성원으로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의 활동에 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주요국에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우리 또한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관계사에서도 중요한 계기들이 자리한 해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7.4남북공동성명도 40주년을 맞게 되며 10.4남북정상선언도 5주년이 됩니다.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회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정신을 국민과 함께 지켜 나가면서, 두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은 6.15남측위원회의 고유한 사명일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회원 여러분!

역사는 일시적인 후퇴는 있을지언정 큰 흐름에서 보면 늘 전진해왔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6.15라는 고삐를 더욱 굳게 쥐고 나간다면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길을 개척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소중한 약속이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통일운동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6.15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단결하고 실천하여 ‘승리의 2012’를 만들어 나갑시다.

6.15와 함께 가는 그 ‘희망의 길’에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회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축사2. 6.15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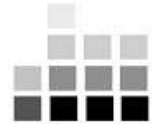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나갈 드높은 결의와 승리의 신심에 넘쳐 있는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을 위한 온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6.15공동선언이 마련되고 리행됨으로써 북과 남은 불신과 대결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자주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온 삼천리강토가 통일의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던 6.15시대에 우리겨레는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북남공동선언을 실천해나가는 길에 나라의 평화도, 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비록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오늘 6.15공동선언리행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지만 하루빨리 이를 타개하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활로를 기어이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는 귀 본부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통일운동세력의 련대연합을 이룩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앞장에서 나아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 101(2012)년 2월 2일



축사3. 6.15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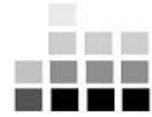
우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으며 선언 이행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총회는 10.4선언 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남북공동선언의 계승과 이행으로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경기본부의 올해 활동에서 실로 풍요한 회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여러분들과 굳게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며 6.15자주통일시대를 되찾기 위하여 보다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올해 2012년을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은 열어나가기 위한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2년 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안건 심의

[주문사항 : 안건을 심의해 주십시오.]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안건 2 : 2011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안건 3 : 2011년 결산 심의의 건

안건 4 : 규약개정 건

안건 5 : 임원 선출의 건

안건 6 : 2012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안건 7 : 2012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안건 1.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주문사항 :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11년 감사보고서

회계연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감사일시 : 2012년 1월 26일

감사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감사자 : 박우석, 양홍관

피감사자 : 안영욱, 박성철

1. 사업 감사

- 이명박 정권 집권 후 6.15공동선언이 무시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알려내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식과 기념강연',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통일강사 아카데미', '평화통일교육', '홍보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경기본부 모든 성원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특히 2011년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수업'에 6.15경기본부가 초·중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화통일교육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평화통일 의식증진사업이 성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더 폭넓고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고, 6.15경기본부의 조직적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2012년 양대선거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6.15국회, 6.15정권이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정 감사

- 어려운 재정현황 속에서도 지난해 감사에서 요구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재정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영수증과 지출내역을 면밀히 감사한 결과 회계수치상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이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다양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 했지만, 몇몇 사업에서는 적자가 있어 재정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보다 더 계획적이고 세밀한 사업기획과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 납부율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몇몇 단체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회비 미납단체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6.15경기본부의 고정지출과 사업비가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미흡합니다. 안정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사업 확대와 더 많은 회원과 후원회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감 사 : 박 우 석



감 사 : 양 홍 관 (인)



안건 2. 2011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1년 6.15경기본부 사업 평가안을 심의해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11년 업무 일지

◆ 조직사업

- 1월 4일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1월 12일 1차 확대 집행위원회 회의
- 1월 21일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1월 26일 감사
- 1월 27일 2011년 정기 총회
- 2월 15일 2차 집행위원회 회의
- 2월 16일 김주삼 도의원 면담
- 2월 16일 사단법인 푸른학교 이사장 면담
- 2월 18일 김상희 도의원 면담
- 2월 23일 민주노총인천본부 방문
- 3월 8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8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0일 3차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5일 2차 운영위원회 회의(6.15수원본부)
- 3월 22일 6.15남측위원회 정기 총회
- 4월 12일 4차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9일 3차 운영위원회 회의(한국노총경기본부)
- 5월 2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17일 5차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24일 4차 운영위원회 회의(민주노동당경기도당)
- 5월 26일 박준철 공동대표 방문
- 5월 31일 한사랑 병원 방문
- 6월 3일 6.15고양본부 방문
- 6월 7일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면담
- 6월 9일 민주당경기도의원 대표의원 면담
- 6월 21일 6차 집행위원회 회의

- 6월 23일 한국노총경기본부 사무처장 방문
- 6월 24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인천)
- 6월 28일 5차 운영위원회 회의(전교조경기지부)
- 7월 3일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장 면담
- 7월 12일 7차 집행위원회 회의
- 7월 14일 6.15경기본부 지역본부 워크숍
- 7월 20일 6.15용인본부 준비를 위한 용인준비 주체들과 면담
- 7월 21일 6차 운영위원회 회의(경기민예총)
- 7월 25일 민주당경기도당 방문
- 8월 4일 조복록 지도위원 면담
- 8월 19일 8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25일 7차 운영위원회 회의(민주노총경기본부)
- 9월 8일 이상성 의원 면담
- 9월 20일 9차 집행위원회 회의
- 9월 26일 8차 운영위원회 회의(민주당경기도당)
- 9월 27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 회의 참가
- 10월 17일 10차 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27일 9차 운영위원회 회의(민주당경기도당)
- 11월 1일 6.15안산본부 임득선 대표 방문
- 11월 7일 부친 백현중 목사 면담
- 11월 18일 11차 집행위원회 회의
- 11월 22일 10차 운영위원회 회의(민주당경기도당)
- 12월 8일 6.15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대전)

◆ 교육사업

- 1월 4일 제2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6강
- 1월 11일 제2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7강
- 1월 11일 안산 광림 아동센터 1차 평화통일교육
- 1월 13일 수원 팔달 희망 아동센터 1차 평화통일교육
- 1월 14일 1차 교육위원 회의
- 1월 18일 제2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8강
- 1월 18일 안산 광림 아동센터 2차 평화통일교육
- 1월 25일 안산 광림 아동센터 평화통일교육
- 1월 31일 결판 평화통일교육 1차, 2차
- 2월 1일 결판 평화통일교육 3차
- 2월 8일 제2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이수자 보습 1강
- 2월 10일 팔달희망아동센터 평화통일교육
- 2월 14일 교육위원회 교육국 1차 회의
- 2월 15일 제2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이수자 보습 2강
- 2월 18일 제3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1강, 2강
- 2월 22일 제2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이수자 보습 3강

- 2월 25일 제3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3강, 4강
- 3월 3일 제2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이수자 보습 4강
- 3월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혁신과 장학관 면담
- 3월 4일 제3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5강
- 3월 9일 3차 교육국 회의
- 3월 18일 제3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6강
- 4월 1일 제3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종강 및 수료식
- 4월 8일 4차 교육국회의
- 4월 15일 통일교육 시연
- 5월 4일 교육위원회 연구팀 1차 회의
- 5월 9일 경기도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회의
- 5월 13일 경기도 교육청 이성대 예산과장 면담
- 5월 24일 27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정자동 푸른학교 중등)
- 5월 26일 교육위원회 교육연구팀 2차 회의
- 5월 30일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준비 모임
- 5월 31일 28차 평화통일교육(성남 태평동 푸른학교 초등)
- 5월 31일 29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정자동 푸른학교 중등)
- 6월 1일 30차 평화통일교육(군포중)
- 6월 1일 31차 평화통일교육(별씨학교 중등)
- 6월 2일 32차 평화통일교육(군포중)
- 6월 3일 33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수진동 푸른학교 초등)
- 6월 7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 사무관 면담
- 6월 7일 34차 평화통일교육(성남 태평동 푸른학교 초등)
- 6월 7일 35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정자동 푸른학교 중등)
- 6월 8일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준비 모임
- 6월 10일 36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수진동 푸른학교 초등)
- 6월 14일 37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정자동 푸른학교 중등)
- 6월 14일 38차 평화통일교육(별씨학교 초등)
- 6월 15일 39차 평화통일교육(안산 으라차차아동센터 초등)
- 6월 15일 40차 평화통일교육(별씨학교 초등)
- 6월 15일 41차 평화통일교육(군포중)
- 6월 16일 42차 평화통일교육(군포중)
- 6월 16일 43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성남동 푸른학교 초등)
- 6월 16일 44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신흥동 푸른학교 중등)
- 6월 17일 45차 평화통일교육(성남 금광동 푸른학교 중등)
- 6월 18일 46차 평화통일교육(고양 푸른학교 중등)
-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 사무관 면담
- 6월 21일 47차 평화통일교육(안양 달팽리아동센터 초등)
- 6월 21일 48차 평화통일교육(안양 달팽리아동센터 중등)
- 6월 22일 49차 평화통일교육(안양 달팽리아동센터 초등)
- 6월 22일 50차 평화통일교육(안양 달팽리아동센터 중등)
- 6월 22일 51차 평화통일교육(의정부 두레교실 초등)
- 6월 23일 52차 평화통일교육(안양 달팽이 초등)

- 6월 23일 53차 평화통일교육(안양 달팽이 중등)
- 6월 23일 54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성남동 푸른학교 초등)
- 6월 23일 55차 평화통일교육(성남 신흥동 푸른학교 중등)
- 6월 23일 교육위원회 교육연구팀 3차 회의
- 6월 24일 56차 평화통일교육(성남 금광동 푸른학교 초등)
- 7월 22일 교육위원회 교육연구팀 4차 회의
- 7월 26일 1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수원청년회)
- 7월 29일 경기도 교육청의 관계자 면담
- 8월 9일 2차 찾아가는 통일교육(민주연합노조)
- 8월 11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1강
- 8월 16일 통일강사 전체 모임
- 8월 18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2강
- 8월 25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3강
- 8월 31일 부천시지역아동센터 평화통일교육
- 9월 1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4강
- 9월 8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5강
- 9월 15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6강
- 9월 16일 6.15경기본부 교육위원 모임
- 9월 28일 민주연합노조 통일강연
- 9월 29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7강
- 10월 6일 제4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8강과 수료식
- 10월 15일 평화통일교육 참관
- 10월 31일 교육연구팀 회의
- 11월 2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1강
- 11월 3일 최철환 의원 면담
- 11월 3일 장해영 교육위원 면담
- 11월 7일 시흥교육청 방문
- 11월 9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2강
- 11월 14일 구리남양주 교육청 방문
- 11월 15일 안양교육청 방문
- 11월 16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3강
- 11월 18일 1차 남부권 교육위원 모임
- 11월 23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4강
- 11월 28일 교육연구팀 회의(부천)
- 11월 30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5강
- 12월 5일 북부권 교육위원 모임
- 12월 7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6강
- 12월 14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7강
- 12월 21일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 8강, 수료식

※ 경기지역 초중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평화통일교육 총 501시간 진행.

◆ 대중사업

- 3월 17일 수원역 선전전
- 3월 22일 제6회 통일마라톤 기획단 준비 회의
- 3월 23일 천안함 1주기 맞이 군사훈련 반대 남북대화 촉구 기자회견(임진각)
- 3월 30일 제6회 통일마라톤 기획단 준비 회의
- 4월 11일 제6회 통일마라톤 기획단 준비 회의
- 4월 22일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사 면담
- 4월 25일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5월 13일 6.15인천본부와 마라톤 준비로 면담
- 5월 16일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5월 17일 천안함 상영회
- 5월 19일 2011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1차 토론회
- 6월 3일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6월 14일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식 및 기념강연
- 6월 12일 6.15남측위원회 6.15기념 국민대회 참가
- 6월 15일 6.15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범국민대회(임진각)
- 6월 16일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6월 30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7월 5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홍보 기획회의
- 7월 6일 경기도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7월 12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7월 16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홍보대사 위촉식
- 7월 21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7월 25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8월 3일 지구촌동포연대(KIN) 10분 설명회
- 8월 4일 경기통일마라톤 대회 현장 답사
- 8월 4일 성남평화연대 10분 설명회
- 8월 5일 용인진보연대 10분 설명회
- 8월 8일 하남희망연대 10분 설명회
- 8월 9일 이천진보연대 10분 설명회
- 8월 10일 화성희망연대 10분 설명회
- 8월 10일 전교조경기지구 간부수련회 10분 설명회
- 8월 11일 민주노동당경기도당 10분 설명회
- 8월 11일 6.15수원본부 집행위 10분 설명회
- 8월 14일 8.15자주통일대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홍보
- 9월 15일 경기청년연대 운영위 10분 설명회
- 9월 19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8월 19일 (사)푸른학교 10분 설명회
- 8월 22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8월 23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현장 답사
- 8월 23일 광주진보연대 10분 설명회
- 8월 23일 파주시의회 의장, 민주당파주시당위원장, 안소희 의원, 조복록 지도위원 면담

- 8월 24일 6.15안양본부 10분 설명회
- 8월 30일 공무원노조경기본부 운영위 10분 설명회
- 8월 31일 6.15안양본부 운영위 10분 설명회
- 9월 2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기획단 회의
- 9월 9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사무국 단합대회
- 9월 15일 경기청년연대 운영위 10분 설명회
- 9월 20일 정대협, 지구촌동포연대와의 간담회
- 9월 21일 2011년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수원화성박물관)
- 9월 25일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사전 답사
- 10월 4일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수원역)
- 10월 4일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2011평화통일축전(인천)
- 10월 5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위원회 사무국 회의
- 10월 10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위원회 사무국 회의
- 10월 11일 경기통일마라톤 행사장 답사
- 10월 14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위원회 사무국 회의
- 10월 18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위원회 사무국 회의
- 10월 19일 경기통일마라톤 진행요원 1차 워크샵
- 10월 21일 경기통일마라톤 진행요원 2차 워크샵
- 10월 23일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개최(임진각)
- 10월 27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평가회의
- 11월 10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평가회의
- 11월 17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평가회의
- 12월 15일 2011년 송년회 및 송년강연회
- 12월 18일 범민련 창립21주년 기념대회(광주)

◆ 연대사업

- 1월 25일 6.15수원본부 신년회
- 1월 25일 수원 1318간담회
- 1월 25일 전교조경기지부 출범식
- 2월 24일 6.15수원본부 총회 참석
- 3월 5일 국민참여당경기도당 당원대회 참석
- 3월 10일 안양 평화아카데미 5기 개강 참석
- 3월 24일 6.15안양본부 총회 참가
- 3월 26일 전농경기도연맹의 농경체험한마당 참가
- 3월 30일 천안함 1주기 신상철 초청 강연(경기여성비전센터)
- 4월 29일 수원시민통일한마당 행사위 발족식
- 5월 12일 안양 평화아카데미 후원 주점 참가
- 6월 2일 여주 통일쌀경작지 모내기 행사 참가
- 6월 4일 6.15수원본부 17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참가
- 6월 12일 6.15안산본부 안산평화마라톤대회 참가
- 6월 30일 전교조경기지부 기자회견 참석

- 7월 8일 6.15수원본부 워크숍 참가
- 7월 19일 통일나눔(준) 창립 총회
- 7월 30일~31일 전농경기도연맹 가족 수련회 참가
- 8월 13일 6.15용인본부 발족식
- 8월 16일 각 정당과의 통일대비 준비 모임 협의
- 8월 19일 이주현 목사 출판기념회 참석
- 8월 30일 6.15안산본부 대표자회의
- 9월 27일 6.15수원본부 인문학강좌 참여
- 9월 29일 경기민언련 후원주점
- 10월 8일 6.15수원본부 통일골든벨 참가
- 11월 8일 6.15안산본부 비전워크숍
- 11월 19일 석달윤 고문 팔순잔치
- 11월 24일 한미FTA 비준무효 전농경기도연맹 기자회견
- 11월 26일 전농경기도연맹 이흥기 의장님 자제 결혼식
- 11월 29일 6.15수원본부 유병호 선생님 1주기 추모행사 기획회의
- 12월 8일 안산평화통일포럼 송년회
- 12월 9일 범민련 경인연합 후원주점(안산)
- 12월 16일 경기시국회의 송년회
- 12월 16일 안양자주학교 후원주점
- 12월 17일 6.15수원본부 유병호 선생님 1주기 추모행사
- 12월 23일 수원여성회 지역아동센터 기금마련 일일찾집

6.15 경기본부 2011년 사업 평가서

1. 2011년 경기본부 사업 방향

- ① 6.15공동선언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대중사업과 청소년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 사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 ②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을 더 많이 모아내고 곳곳에 시군본부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③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한다.

2. 영역별 사업 내용

1> 교육 사업

1) 통일강사 아카데미

■ 사업 계획

- 제3기 통일강사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초급, 중급과정을 통한 전문적이고 대중적인 통일강사를 20명 정도 양성한다.
- 큰 단위에는 자체 통일강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 양성된 통일강사는 경기도 초중등학생, 아동센터 학생, 찾아가는 통일교육의 강사로 활동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제3기, 제4기, 제5기 통일강사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교육위원을 35명까지 양성 함.
- 큰 단위에서의 통일강사 육성은 진행되지 못 함

2) 평화통일교육 사업

■ 사업 계획

-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으로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에 <평화통일교육>을 나간다.
- 기본강의는 2장짜리 2개로 총 4강의 교육안을 준비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경기도 교육청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의 유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경기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평화통일교육을 415시간을 진행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와 대안학교에 86회의 평화통일교육을 진행
- 초등학생 4강, 중학생 4강 교안으로 진행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와 대안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사비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협의 중

3) 찾아가는 통일교육

■ 사업 계획

- 소규모 단체, 모임에 찾아가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며 강사는 외부강사와 교육위원이 적절히 분담한다.
- 강사비는 기본을 12만원으로 한다. (해당단체 : 7만원 + 6.15경기본부 5만원)

■ 사업 경과 및 평가

- 민주연합노조의 각 지부와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진행하기로 합의해서 현재 진행 중.
- 민주연합노조 2회, 경기청년연대 1회, 수원YMCA 1회 찾아가는 통일교육 진행
- 강사비는 10만원으로 5만원은 6.15경기본부에서 지원 함.

4) 2011년 교육사업 평가

◆ 총 평

-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성을 심어 준 것이 큰 성과이다. 이를 위해 통일강사 아카데미를 통해 35명의 평화통일강사가 양성된 것이 큰 성과이다.
- 상반기에는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86회의 평화통일교육, 하반기에는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을 중심으로 415회의 평화통일교육이 실시 되어 강사들과 교육사업에 큰 경험을 갖게되었다.
- 9백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부족한 6.15경기본부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부족한 6.15경기본부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있어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 운영측면에서의 평가

- 넓은 경기도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권역별(동부, 남부, 북부) 체계를 도입한 것은 좋았다. 하지만 권역별 팀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집행력, 사업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 교육연구팀이 상반기에 교안을 만들고 움직인 것은 매우 좋았으나 하반기에는 잘 작동이 되지 않았다. 정기적인 운영을 통한 연구의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교육위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로 커나갈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체계측면에서의 평가

- 교육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획, 조직, 연구, 홍보사업이 구분되면서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분업화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 조직을 맡는 담당과 교안개발, 교육위원 자질 향상 담당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 과제측면에서의 평가

- 좀 더 실효적인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와 공무원들을 비롯해 성인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

2> 조직 강화 확대 사업

1) 조직 강화 사업

① 교육위원회 신설

■ 사업 계획

- 통일강사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위원이 20명 정도가 되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 교안의 지속적인 개발과 경기도 초중등학교, 아동센터, 시민단체에 평화통일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 교육위원장과 통일국장을 두어 이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양훈도 교육위원장과 이효정 교육국장 내정.
- 교육연구팀 구성하여 교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경기도를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관리체계를 갖추려 함.

②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 사업 계획

번호	재정 확대 내역	목 표
1	공동대표 확대를 통한 회비 확충	130,000
2	회비 재조정을 통한 재정 확충	110,000
3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금 확충	50,000
4	후원회원 50명 확충(5천원 기준)	250,000
5	교육사업	
		540,000

■ 사업 경과 및 평가

번호	재정 확대 내역	목 표	결 과	집행율(%)
1	공동대표 확대를 통한 회비 확충	130,000	80,000	61.5
2	회비 재조정을 통한 재정 확충	110,000	120,000	109.0
3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금 확충	50,000	125,000	250
4	후원회원 50명 확충(5천원 기준)	250,000	381,000	153.4
5	교육사업비		9,220,000	
		540,000	706,000	130.8

가. 공동대표 확대를 통한 회비 확충 => 현 8만원

- 1월 : 8만원
 - 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 경기본부 : 5만원
 - 박준철(전 민주평통광명시협의회 의장) : 3만원

나. 회비 재조정을 통한 재정 확충 => 현 12만원

- 1월 : 11만원
 -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7만원(인상), 6.15고양본부 1만원(인상),
 - 6.15수원본부 1만원(인상), 6.15안산본부 1만원(인상), 6.15안양본부 1만원(인상)
- 3월 : 1만원
 -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1만원(인상)

다. 고문, 감사, 지도위원의 후원금 확대 => 현 1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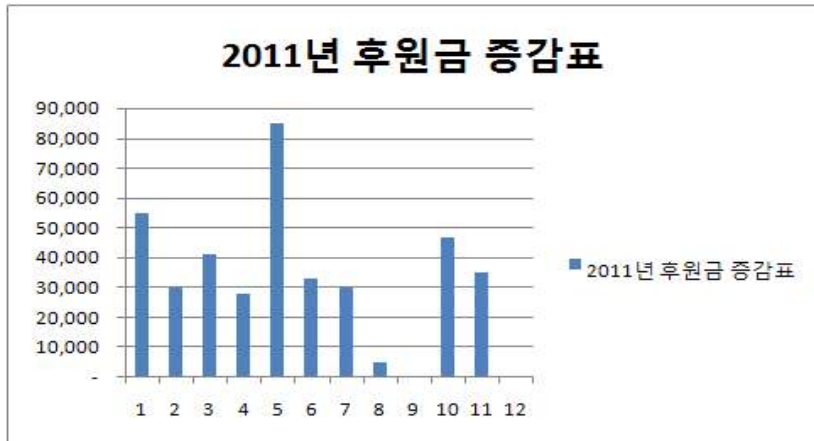
(고문-18명 중 7명 / 지도위원-12명 중 12명 / 감사-2명 중 2명)

- 1월 : 3만5천원
 - 김용한 5천원, 박우석 2만원, 안재구 5천원, 송영주 5천원(인상)
- 2월 : 1만원
 - 수산스님 1만원
- 3월 : 2만원
 - 박공우 1만원, 이상성 1만원
- 4월 : 2만원
 - 김동균 1만원, 이원영 1만원
- 5월 : 3만원
 - 윤화섭 1만원, 안민석 1만원, 고영인 1만원
- 7월 : 1만원
 - 임종성 1만원

라. 후원회원 50명 확충 => 현 38만 1천원

- 1월 : 5만5천원
 - 이달호 5천원(인상), 이정은 1만원, 원순자 5천원, 유은옥 5천원, 전주영 1만원, 민영완 5천원, 정혁남 1만5천원
- 2월 : 4만원
 - 박진우 1만원, 이대근 1만원, 정준 1만원, 박재형 1만원
- 3월 : 3만1천원
 - 진승일 6천원, 김성현 1만원, 박비상 5천원, 민진영 5천원, 고제형 5천원,
- 4월 : 2만8천원
 - 장해영 1만원, 조상현 5천원, 윤영훈 5천원, 김정아 3천원, 김진훈 5천원
- 5월 : 8만 5천원
 - 범상스님 1만원, 정현경 5천원, 박옥분 5천원, 김희정 1만원, 이경진 5천원, 이은애 5천원, 엄주표 1만원, 허재호 1만원, 안소희 1만원, 이광열 5천원, 김진국 1만원
- 6월 : 3만 3천원
 - 이충익 1만원, 김향미 3천원, 김충모 1만원, 안형원 1만원
- 7월 : 3만원
 - 임성옥 1만원, 박현기 1만원, 이종선 1만원,

- 8월 : 5천원
 - 김종완 5천원,
- 9월 : -8천원
 - 이인섭 -3천원, 최영희 -5천원
- 10월 : 4만 7천원
 - 김정현 1만원, 김원조 1만원, 최봉현 1만원, 신영균 1만원, 조명심 1만원, 송순자 -3천원
- 11월 : 3만 5천원
 - 이유진 1만원, 권용희 1만원, 이미숙 1만원, 이광희 1만원, 남길현 -5,000원



※ 현 후원회원 : 132명

마. 교육사업비 => 9,220,000원

-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 교육 사업비 : 약 8,600,000원(9월~12월)
- 아동센터, 대안학교 평화통일교육 : 약 620,000원

- 1번에서 4번까지의 재정 확대 방안은 목표치를 넘는 성과를 내었다.
- 5번 교육사업비도 성과를 내었다.

③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사업 계획

- 매월 진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한다.
- 확대 집행위원회 회의를 상하반기 진행하도록 한다.
- 집행위원회의 확대를 통한 집행위원회의 강화와 결속력 확대

■ 사업 경과 및 평가

- 운영위원회의는 10회, 집행위원회는 11회로 매월 진행되어 안정적, 일상적 운영이 되었다.
- 2011년 6.15지역본부 워크숍을 진행(7월 14일)

④ 소식지 발행

■ 사업 계획

- 매월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회원, 공동대표에게 발송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번호	구분	발행부수
1	1월호	127부
2	2월호	133부
3	3월호	137부
4	4월호	142부
5	5월호	147부
6	6월호	157부
7	7월호	161부
8	8월호	165부
9	9월호	165부
10	10월호	167부
11	11월호	170부
		1,671

- 공동대표, 고문, 지도위원, 감사, 후원회원, 6.15고양본부에 우편을 보내준다.

2) 조직 확대 사업

① 시군본부의 건설 확대

■ 사업 계획

- 각 시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6.15시군본부를 건설하는 분위기와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용인, 광명을 비롯한 지역에 6.15시군본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선 힘을 쓴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6.15용인본부가 8월 13일에 발족했으나 6.15경기본부에는 결합되지 못 하고 있다.
- 광명에는 6.15공동위원회를 건설하지 못 했다.

② 광역단위 부문단체의 참가 확대

■ 사업 계획

- 경기지역의 종단, 광역단체가 6.15경기본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 경기본부가 6.15경기본부에 가입 했다.

③ 개인 인사의 참여 확대

■ **사업 계획**

- 6.15경기본부의 고문, 지도위원,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 개인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박준철(전 민주평통광명시협의회 전 의장)님이 6.15경기본부 공동대표로 참여 했다.
- 김형식(전 도의원), 백승대(도의원) 지도위원은 사임 함.

3> 6.15 공동선언, 10.4선언 대중화 사업

1) 대중사업

①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사업 계획**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평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성대하게 추진한다.
- 6.15서울, 인천본부에 공동개최를 제안하며 민통선이 마라톤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6.15해외측, 북측과 함께 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작년에 비해 참가자가 줄기는 했으나 1,620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여 성대히 진행하였다.
- 재정 지출은 5천6백6십만원으로 9십만원 적자가 발생했다.
- 올해로 4년 내내 적자를 본 마라톤대회를 대회의 의의와 향후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여 경기통일마라톤대회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결과 ◆

1.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목표

- 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널리 알리는 마라톤 대회
- ② 수도권외의 통일 열기를 한자리로 모으는 마라톤 대회
- ③ 마라톤 수익금을 대북지원하는 마라톤대회
- ④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
- ⑤ 향후 임진각-개성간 국제 평화마라톤대회 준비

2. 개요

- 명칭 : 제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주최 : 6.15경기본부, 민주노총경기본부
- 후원 : 수원시, 안산시, 과주시, 한사랑병원, 민족21,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경기지역언론사협회, 홍재언론인협회)
- 주관 :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위원회
- 일시 : 2011년 10월 23일(일요일) 오전 9시
-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
- 홍보대사 : 배우 권해효
- 코스 및 참가비 : 6.15km (2만원, 초등학생 1만5천원) / 10km, 하프 (3만원)
- 접수 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 홈페이지 : www.marathontongil.org
- 부대행사 :
 - 떡거리마당(막걸리와 김치, 통일떡메치기 등)
 - 참여마당(통일연날리기, 페이스페인팅, 통일포토존 등)
 - 전시마당(평화, 통일, 민족, 재외동포 관련 테마거리 조성 등)

3. 조직 체계

- 대 회 장 :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송정현(민주노총경기본부 본부장)
- 부대회장 : 명예직(30만원)
- 대회위원 : 명예직(10만원)
- 조직위원장 : 윤병일(민주노총경기본부 통일위원장)
- 재정위원장 : 박준철(6.15경기본부 공동대표)
- 집행위원장 : 안영욱(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 사무처장 : 박성철(6.15경기본부 사무처장)
- 자봉단장 : 최승재(6.15수원본부 집행위원)
- 총무부장 : 윤정현(상근자)
- 기 획 사 : 자바르떼(대표 최현수) 기획, 홍보, 진행

4. 참가자 결산

총 참가자			
	인원	남	여
하프	121	107	14
10	254	212	42
6.15	1011	624	387
어린이	200	112	88
합계	1,586	1,055	531

※ 현장접수자 - 42명

5. 재정 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금액
참가비		34,447,000	운영비	8,646,937
분담금	대회위원	7,350,000	참가자지급품	25,380,670
	민주노총경기본부	3,700,000	시상품, 경품	1,803,410
후원금	대사업장 후원	1,100,000	행사장 시설	7,285,000
	후원	7,400,000	참가지원금	4,662,920
	기타 후원	1,050,000	공연비, 부대행사	2,377,020
기 타	현장접수	726,000	홍보비	4,207,000
			5회대회 차입금	1,500,000
			결손	830,000
			미입금	2,169,800
합 계		55,773,000	합 계	58,862,757
			잔 액	-3,089,757

◆ 미입금 단위

* 참가비

소 속	금 액
제한조선족연합회	809,800
희망광주네트워크	120,000
성남평화연대	120,000
민주노총 이천	20,000
합 계	1,069,800

* 대회위원비

소 속	금 액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800,000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200,000
도의원	100,000
합 계	1,100,000

② 6.15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대회

■ 사업 계획

- 6.15공동선언발표 11주년 기념대회를 6.15경기본부 공동대표자를 비롯해 경기지역 각 계인사와 함께 성대하게 진행한다.
- 시군본부와 부문단체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1).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식

- 일시 : 2011년 6월 14일 (화) 오후 5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인원 : 60명 정도

2).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강연

- 일시 : 2011년 6월 14일 (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강사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제목 : 6.15공동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평화통일의 길

3).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신문광고 - 6월 15일자 경향신문

6.15 경기본부 요구사항

6.15경기본부는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맞아 최악의 위기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의 시대인 '6.15시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24조치 철회하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최악의 남북관계 개선과 전쟁 방지를 위해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즉각 실시하라.
- 통일부를 아닌 분단고착부로 만든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 경기미로 대북지원하고 북의 지하자원으로 돌려받자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4).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③ 남북교류협력 사업

■ 사업 계획

-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기행사업을 진행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2) 정책 사업

①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사업 계획

- 상반기(5월경)토론회는 “경기도의 각 시군별 평화통일프로그램 개발 방안”주제로 하반기(9월경)토론회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1)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1차 토론회

- 주제 : “경기도의 각 시군별 평화통일 프로그램 개발 방안”

- 시기 : 5월 19일(목) 오후 3시 ~ 5시
- 장소 :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
- 주최 : 6.15경기본부
- 후원 : 경기도
- 토론자 구성:
 - 사회자 : 이주현(경기민언련 공동대표)
 - 발제자 : 1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 -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자 : 1 - 김주삼 (경기도의원)
2 - 이상성 (경기도의원)
3 - 안소희 (파주시의원)
4 - 임권수빈(6.15수원본부 집행위원장)
- 토론 주제
 - 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평화통일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② 평화통일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사례, 범주는
 - ③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2)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

- 주제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 시기 : 9월 21일(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 수원화성 박물관 교육실
- 주최 : 6.15경기본부
- 후원 : 경기도
- 토론자 구성:
 - 사회자 : 양훈도(수원방송 시사토론 사회자)
 - 발제자 : 1 -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2 - 이효정(6.15경기본부 교육국장)
 - 토론자 : 1 - 신은미((사)푸른학교 이사장)
2 - 최철환(도의원)
3 - 한미현(6.15경기본부 교육위원)
4 - 안혜영(도의원)
- 토론 주제
 - ① 경기도 내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현황 진단
 - ② 평화통일교육의 향후 개선점은

3)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1년 7월 6일 수요일 16:00
- 장 소 : 경기도 교육 정보연구원 2층 세미나실
- 주 최 : 전교조경기지부
- 주 관 :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 토론자
 - 사회자 : 최창의(경기도 교육의원)
 - 발제 1 : 조례의 필요성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발제 2 : 조례에 답아야 할 내용은 : 이종섭(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장)
- 토론자 : 간우연 (삼일초등학교 교사)
강인식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안영욱 (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 토론 주제

- ① 조례의 필요성 정립
- ② 조례에 답아야 할 기본 내용은(목적, 기본이념, 적용범위, 역할, 체계 등)

② 통일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 사업

■ 사업 계획

- 각 정당과 협의하여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를 비롯하여 통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 경기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수원과 안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평화통일 기반 및 의식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 고양에서는 이미 있는 조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3) 선전 여론 사업

① 홍보위원회 활동

■ 사업 계획

- 이 활동의 의미는 시민들에게 통일, 평화, 민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생각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 7명이 1조가 되어 2조가 매주 한 개의 칼럼을 쓰고 이를 지역 언론사에 보낸다.
- 작년 11개 언론사에서 더 확대해 나간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번호	1조	2조
1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범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2	이종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문영희(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3	안신정(6.15경기본부 홍보위원)	김찬수(6.15경기본부 집행위원)
4	수산스님(6.15경기본부 지도위원)	한옥자(6.15경기본부 지도위원)
5	서상철(6.15경기본부 공동대표)	이효정(6.15경기본부 집행위원)
6	류명화(6.15경기본부 공동대표)	이주현(6.15경기본부 운영위원)
7	김용한(6.15경기본부 지도위원)	양홍관(6.15경기본부 감사)

■ 월별 칼럼 수 - 43편

월	칼럼 수	월	칼럼 수
1월	5편	7월	3편
2월	2편	8월	4편
3월	5편	9월	3편
4월	4편	10월	1편
5월	6편	11월	4편
6월	5편	12월	1편

②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와 실천 사업 강화

■ 사업 계획

- 6.15경기본부의 성명서, 논평을 자주 발표하도록 한다.

■ 사업 경과 및 평가

번호	제 목	날 짜	비 고
1	천안함 사건 1주기 맞이 <군사훈련 반대, 남북대화 촉구 기자회견>	3월 23일	임진각 망배단
2	이명박 정부는 조건없는 남북대화 즉각 실시하라	6월 8일	보도자료
3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6월 14일	호소문 발표
4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	10월 4일	수원역
5	평화통일교육 중단 요구하는 김진춘 의원 공개사 과 요구 기자회견	11월 24일	도의회 앞
6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건	12월 20일	

■ 총 평

○ 6.15경기본부에게 있어 2011년은 막막한 통일정세 속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집행부 총원과 교육위원 확충 등 내적 역량을 마련하고 도의원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유리한 외적 조건을 만들려고 줄기차게 노력한 한해였다.

○ 특히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매우 큰 성과이며 향후 발전 전망도 매우 밝다. 35명의 평화통일교사 양성과 86회 아동센터와 대안학교의 평화통일교육, 415시간 학교 평화통일 수업이라는 숫자가 모든 성과를 말해주고 있다. 올해는 청소년을 상대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내년에는 단체, 대학생, 공무원 등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통일교육 강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조례와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교육의원, 도의원, 정당들과 협력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했으며 각 시군에서도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본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는 내년에 나올 듯하다.

○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로 2명이 가입하고 지역본부가 발족한 것은 큰 성과이다. 아울러 사무처장과 교육사업을 담당할 교육위원회와 교육국장, 교육연구팀 마련을 통해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집행부의 안정적 사업을 위해 상근자(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의 상근비의 체재 지급과 교육국장의 상근비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 이제 6회를 지나면서 경기통일마라톤대회는 각 지역과 단체에서 연례적 행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올해 참가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쉬움이 있다. 4년 내내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참가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올해는 대외적 사업, 연대사업이 많이 부족하였는데 내년에는 경기시국회의 등 연대사업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재정을 확충하는데 목표치보다 128%의 초과 달성을 하였고 통일교육사업비가 들어옴으로서 부족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평화통일교육사업의 확대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대표들의 회비납부율을 높이는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안건 **3.** 2011년 결산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1년 결산안을 심의해주십시오.]

⇒ 별 지

안건 4. 규약 개정 건

[주문사항 : 규약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경기본부 규약 4차 개정안

1. 취지

- 현 6.15경기본부의 변화된 직책이 규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수정한다.
- 이번 개정은 4차 개정이다. 제정(2005. 4. 29), 1차 개정(2006.3.16), 2차 개정(2007.3.27), 3차 개정(2009.1.22)

원 안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p>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p> <p>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p> <p>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p> <p>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p> <p>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p> <p>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p> <p>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p> <p>제5조(운영원칙)</p>	

<p>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p>	
<p>제 2 장 회 원</p>	<p>제 2 장 회 원</p>
<p>제6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p> <p>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한다.</p> <p>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p> <p>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p> <p>①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p> <p>②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p> <p>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p> <p>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p> <p>②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p> <p>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p>	
<p>제 3 장 회 의</p>	<p>제 3 장 회 의</p>
<p>제1절 총회</p>	
<p>제9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와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p> <p>제10조(소집)</p> <p>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p> <p>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p> <p>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11조(기능)</p> <p>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p> <p>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p> <p>③ 사업 계획 결정과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p> <p>④ 예산과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p>	
<p>제2절 운영위원회의</p>	

<p>제12조(구성) 상임대표,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p> <p>제13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p>제14조(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와 수입사항 처리 ② 가입, 탈퇴, 사고에 관한 사항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⑤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인선에 대한 건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고문과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과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p>제12조(구성) 상임대표,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p> <p>제13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p>제14조(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와 수입사항 처리 ② 가입, 탈퇴, 사고에 관한 사항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⑤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사무처 집행부 인준에 관한 건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고문과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과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p>제3절 특별위원회</p>	
<p>제15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p>	
<p>제4절 공동집행위원장 회의</p>	<p>제4절 집행위원회</p>
<p>제16조(구성과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행위원회는 시군본부 집행책임자와 부문단체의 약간 명으로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부문단체의 약간 명은 부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제17조(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 수입사항 집행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p>제16조(구성과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행위원회는 시군본부 집행책임자와 부문단체의 약간 명으로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부문단체의 약간 명은 부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p>제17조(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 수입사항 집행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p>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p> <p>④ 필요시 확대 집행책임자연석회의 소집</p>	<p>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p> <p>④ 필요시 확대집행위원회 소집, 확대집행위원회는 6.15경기본부 소속단체들의 집행책임자연석회의이다.</p>
<p>제5절 자문기구</p>	
<p>제18조(구성) 각계 원로와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p> <p>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p> <p>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p>	
<p>제 4 장 임원</p>	<p>제 4 장 임원</p>
<p>제19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p> <p>제20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상임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p>② 공동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p>③ 운영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p>④ 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으로 하고 사업과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p>제2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제19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p> <p>제20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상임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p>② 공동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p>③ 운영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p>④ 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으로 하고 사업과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p>제2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제 5 장 사무처</p>	<p>제 5 장 사무처</p>
<p>제22조 (사무처)</p> <p>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p>	

<p>②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p> <p>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p>	
<p>제 6 장 재 정</p>	<p>제 6 장 재 정</p>
<p>제23조(수입 및 지출) 6.15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p> <p>제24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책정한다.</p> <p>제25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p>	

안건 5. 임원 선출의 건

[주문사항 : 2012년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 선출 안 >

임원	이름	소속	비고
상임대표(1명)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감사(2명)	이주현	매원교회 목사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운영위원(14명)	권명애	6.15고양본부 상임공동대표	
	박희영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임득선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길용	6.15안양본부 상임대표	
		6.15용인본부 상임공동대표	새 조직
	강상원	평택민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송현숙	경기청년연대 의장	
	서종훈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지회장	
	조정식	민주통합당경기도당 위원장	새 조직
	송정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이충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지부장	
	신동선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대표교체
	안동섭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새 조직
	박남식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의장	

안건 6. 2012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주문사항 : 2012년 사업계획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12년 사업 계획

1. 2012년 통일정세와 과제

① 2012년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절호의 기회이다.

○ 18~19세기 유럽, 20세기 미국에 이어 21세기 동북아시아로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민족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날지 아니면 남북이 분열하여 주변 열강에 휘둘리는 영구분단국으로 전락할지의 기로에 서있다.

○ 2012년은 미국과 러시아 대신, 중국의 지도부교체 등 주변열강들의 정치적 격변과 미중간의 신냉전이 아직 고착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국상을 맞은 이북은 유훈통치와 안정적인 권력승계로 2012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대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주동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북은 풍부한 자원과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의 관문으로 동북아중심시대에서 주요국가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미국 경제의 몰락은 군사적 패권의 약화, 외교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등 동북아지역의 패권 약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과의 전쟁도 어렵고 '전략적 인내'도 파탄 난 미국이 북의 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 체결 포함)와 비핵화에 대한 빅딜 요구를 수용할 지 말지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 세계 중심이 동북아지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동북아의 중심 국가, 번영하는 통일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②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2012년 19대 총선, 18대 대선에서 6.15공동선언 지지, 이행 세력이 꼭 집권하여야 한다.

○ 북의 국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 미숙으로 남북관계는 완전 단절되었으며 3월 초 키리졸브 훈련과 천안함 2주기, 핵안보정상회의(3월 28일) 그리고 총선(4월 11일)의 결과가 2012년 남북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이명박 집권 후 파탄 난 민생문제, 경제문제(부익부 빈익빈 심화, 비정규직 문제, 물가상승, 실업문제 등), 남북관계문제, 민주주의 파탄 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통일과 복지가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평화 대 전쟁, 통일 대 분단세력이 명확히 구분 될 것이다. 진보, 민주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6.15공동선언 지지, 이행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③ 2012년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기이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6.15공동선언 지지, 이행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 궤도에 오르고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획기적 전환이 있을 것이다.

○ 2013년 붓 물 터진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분위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 평화통일교육, 선전사업 등 평화통일의식증진사업을 폭 넓고 공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급속도로 발전하는 남북관계 곳곳에서 제 역할을 수행 할 인재 발굴과 양성이 절실하다.

- 교류협력사업과 의식화사업이 지속적이고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2. 2012년 경기본부 사업 방향

① 6.15공동선언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대중사업과 청소년, 시민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②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은 진행한다.

③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을 더 많이 모아내고 부문단체, 지역연대단체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

④ 6.15국회, 6.15정부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영역별 사업 내용

1> 평화통일교육 사업

■ 평화통일교육 사업 방향

- ① 평화통일강사의 현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낸다.
- ② 학교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을 더 확대하면서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의 평화통일교육도 병행한다.
- ③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화통일체험도 진행한다.
- ④ 교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⑤ 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회의 구성과 교육연구팀의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한다.

■ 평화통일 교육 방향

- ①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사고의 향상을 통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 ② 평화의 감수성 향상을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게 한다.
- ③ 다름과 틀림의 인식을 통한 상호 존중의 정신을 알게한다.
- ④ 객관적 역사 인식과 우리 민족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한다.

① 통일강사 양성 사업

- 통일강사 아카데미 2차 과정을 통해 교육위원의 실력을 한층 더 높여낸다.
- 성인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사업

- 1) 경기도 교육청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 3월부터 경기도내 초중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한다.
- 2) 아동센터 및 대안학교 ‘평화통일교육’
 - 수도권의 대안학교, 아동센터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한다.
- 3) 경기도교육청 혁신지구 ‘평화통일교육’
 - 경기도내 혁신지구(안양과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시흥) 학교에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한다.
- 4) 평화통일교육 ‘교사직무연수’
 - 여름방학에 ‘평화통일교육 교사직무연수’를 진행한다.
- 5) 평화통일캠프
 - 평화통일교육 후속사업으로 평화통일캠프를 진행한다.
- 6) 5.18교육
 - 경기지역 아동센터, 대학생,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5.18교육을 진행한다.

- 5.18재단의 지원사업으로 한다.

③ 찾아가는 통일교육

- 공무원노조와 민주연합노조를 비롯한 단체, 모임에 찾아가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며 강사는 외부강사와 교육위원이 적절히 분담한다.

■ 평화통일교육 장기적 전망

○ 2012년 목표

- 40명 교사 양성, 전업강사 5명 양성
- 교육대상의 확대(학교에서 아동센터, 대안학교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공무원, 교사))
- 기초자치단체 내에 평화통일교육 지원금 마련
- 기초자치단체 내에 조례마련

○ 2013년 목표

- 전업강사 10명 양성
- 교육대상 공무원, 교사로 전면 확대, 민방위 교육장 2014년 준비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준비

2> 조직 강화 확대 사업

1) 조직 강화 사업

① 교육위원회 강화

- 상근하는 교육국장을 선임한다.
- 교육연구팀은 강사의 능력 향상과 교안의 지속적 개발을 전담한다.
- 권역별 모임은 3개 권역(동부, 남부, 북부)로 운영하고, 권역팀장이 책임진다.
- 교육위원회 회의를 상설화 한다. 교육위원회 구성은 교육위원장, 교육국장, 교육연구팀장, 권역별(동부, 남부, 북부) 팀장으로 한다.

②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번호	재정 확대 내역	목 표
1	공동대표 확대, 회비 재조정을 통한 확충	50,000
2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금 확충	200,000
3	후원회원 확충	150,000
4	교육사업	13,000,000
		13,400,000

- 공동대표의 회비를 재조정한다.
- 도의원, 국회의원, 개인인사를 지도위원, 고문으로 대거 위촉한다.
- 후원회원은 교육사업과 여타 사업을 통해 확대 해 나간다.
- 교육사업은 확대된 교육사업을 통해 재정은 마련한다.

③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매월 진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한다.
- 사업과 조직운영 강화를 위한 집행위원회, 지역본부집행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한다.

④ 소식지 발행

- 매월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회원, 공동대표에게 발송한다.

⑤ 홈페이지 활성화

- 홈페이지를 상시적으로 관리, 활성화 한다.

2) 조직 확대 사업

① 시군본부의 건설 확대

- 각 시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6.15시군본부를 건설하는 분위기와 체계를 마련한다.

② 시별 진보적 연대회의 참가 조직

- 시군별 진보적 연대단체가 6.15경기본부에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③ 광역단위 부문단체의 참가 확대

- 경기지역의 중단, 광역단체가 6.15경기본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개인 인사의 참여 확대

-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저명인사 등을 6.15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3> 6.15 공동선언, 10.4선언 대중화 사업

1) 대중사업

① 제7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평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성대하게 추진한다.
- 수도권 평화와 통일 지지하는 개인, 단체를 최대한 조직한다.
- 민통선이 마라톤 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6.15해외측, 북측과 함께 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마라톤대회를 통해 대북지원 기금을 조성해 이북어린이 필요물품을 보낸다.

② 6.15 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사업

-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식을 한다.
- 6.15공동선언 관련 현수막 달기 사업을 한다.
- 더 많은 경기지역의 시군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되도록 독려

한다.

③ 연대사업

- 총선과 대선에 6.15지지 후보가 당선되어 6.15국회, 6.15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의 제단체와 함께 협력한다.
 - : 평화통일후보 선정, 지지 사업
 - : 범야권후보 단일화 촉구 사업
- 경기시국회의 등 지역연대회의에 결합한다.

2) 정책 사업

①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상반기(4월 말경)토론회는 “광역단위 평화통일교육 현황과 과제”주제로 하반기(8월 말경)토론회는 “대선과 평화통일(18대 대통령이 가져야 할 통일정책)”을 주제로 한다.

② 평화통일 기반 마련 사업

- 각 정당과 협의하여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각 시군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면서 추진한다.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회

- 7월 27일 정전협정 59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3) 선전 여론 사업

① 홍보위원회 활동

- 이 활동의 의미는 시민들에게 통일, 평화, 민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생각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 홍보위원 8명이 매주 한 개의 칼럼을 쓰고 이를 지역 언론사에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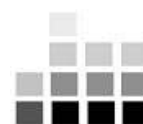
②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와 실천 사업 강화

- 6.15경기본부의 성명서, 논평을 자주 발표하도록 한다.
- 실천사업(선전사업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여론을 확대한다.

안건 **7.** 2012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주문사항 : 2012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 별 지



참고1. 6.15민족공동위원회 규약

1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2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원칙과 구조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활동해나간다.
- 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을 들 수 있다.

3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운영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연 1-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소집한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요 민족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 결정한다.
- 3)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합의한다.
- 4)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합의를 실

천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한다.

-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각기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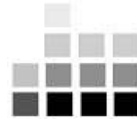
4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사무국

-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둔다.
-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의 설치시기, 구성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은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다.

5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한다.

이 규약은 2005년 12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참고2. 6.15남측위원회 규약

제정 2006년 2월 15일

제 1 조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제 2 조 운영 원칙

1. 6.15남측위원회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2.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제 3 조 공동대표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공동대표회의

1.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2. 공동대표회의는 6.15남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
3.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상임대표, 명예대표, 운영위원, 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4. 공동대표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1/5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공동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4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른 운영위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공동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책임진다.

3.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상임대표 또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집행위원, 부문계층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광역시도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분야별위원회의 집행책임자, 대변인실의 집행위원, 사무처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상임대표, 명예대표, 고문, 상임고문, 감사

① 상임대표 및 명예대표

1. 6.15남측위원회는 1인의 상임대표와 약간 명의 명예대표를 둔다.
2.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며, 6.15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는 필요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

1. 6.15남측위원회는 고문과 상임고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

1. 6.15남측위원회는 업무와 재정을 감독할 2 -3인의 감사를 둔다.

제 5조 부문계층별, 지역별 본부

① 부문계층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부문계층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부문계층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부문계층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광역시도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광역시도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광역시도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시도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6.15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 6조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대변인

① 정책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반 정책적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토론회와 포럼 등 각종 형식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책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총무, 조직, 지역, 홍보, 국제연대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 대변인

1. 6.15남측위원회는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제 7조 사무처

1. 6.15남측위원회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집행 상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한다.
3. 사무처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둔다.
4.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의 간부 및 간사를 채용한다.

제 8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대표단 구성

1.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 파견될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정한다.

제 9조 재정

1. 6.15남측위원회의 재정은 소속단체 및 인사들의 회비와 후원금, 행사참가비,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 6.15남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1회 감사를 통해 재정을 감독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공동대표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된다.